

閔丙台 教授의 “Pluralism 특강”

裴成東 (명지대)

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6년간을 줄곧 민병태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그 분의 강의를 들은 제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지만 말씀을 조리 있게 하시지 않아 애를 먹었다. 가장 당황했던 것이 1학년 1학기의 정치학개론이었다. 도저히 정확하게 노트를 할 수 없어서 받아 적을 수 있는 만큼 휘적거리 와서는 집에서 노트정리를 다시 했다.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사람, 책 이름 등 정확하지 않은 것은 平凡社 정치학사전을 뒤적거리고 해서 앞뒤를 맞추고 사람과 책이름의 철자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했다. 한 학기를 마친 뒤, 1956년 여름 방학에 선생께서 번역하신 H. Laski의 『정치학강요』 두 권을 읽으면서 *prima facie*, *mutatis mutandis* 같은 문자를 배워 대학공부를 하는 기본도 내고 선생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학년 2학기에 가서도 강의를 난삽하긴 마찬가지여서 일단 필기를 하고 집에서 다시 정리를 하였다.

그런데 서당개 3년 식으로 3학년이 되면서 서서히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노트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여기에 옮겨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은 1958년, 그러니까 3학년 때의 강의 노트이다. 당시 문리대 교수들의 강의는 매우 부실하였다. 내용이 아니라, 휴강이 잦았다는 말이다. 선생은 비교적 강의를 많이 하신 편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4시간 연속 강의였는데 120분 정도 하시지 않았나 싶다. 노트에 보니 58. 5.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4월 개강이지만 강의는 5월에 들어서 시작했던 모양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당시에 필기했던 노트를 그대로 옮겨 보겠지만 지금 보아서 고칠 것이 있으면 손을 대도록 하겠다. 요즘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선생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문맥이 잘 맞지 않은 것이 있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대로 두어 제자들의 회상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노트에 외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필자 자신이 그렇게 받아썼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국가의 본질

현금에 있어 국가에 대한 정의란 무의미하다. D. Easton은 *Symbol of Politics*에서 심리학적 방법을 택하고 있는 Lasswell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의 본질에 대한 구명의 의의는 결국 국가생활 자체의 연구분석에 있는 것이다. 현대까지의 정치사상의 主潮는 영미의 사회학적인 국가이론과 대륙의 개념적 국가이론으로 분류되는데 후자의 법철학적 체계가 사회윤리문제와 결부될 때, 정치철학으로 발전하며 현대의 정치와 정치학에 대하여 규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Baghot, Dicey, Burgess, Willoughby — 이분들은 국가의 모든 문제들을 법률적 아프로치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헌법을 정치의 기본이 되는 틀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위법적인 노동파업처럼 꼭 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만은 없는 일이 많다. 多元論은 그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 있는 Proudhon이나 Leon Duguit같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국가의 rightousness를 논했지만 그들은 추상적, 주관적이었다.

정치적으로 “정의실현”이란 우스꽝스런 얘기이다. 경제분야에서는 평등의 의미가 있으며 정의실현도 사실로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국가는 경제에 더 치중한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적 존재로서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주의적 어프로치가 나타났으며 영국의 Trade Unionism, 프랑스의 Syndicalisme 등이 이에 속한다.

19세기 국가이론: Jellinek는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를 가지고 국가를 설명, 여기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권 개념(그의 *Zweiseiten Theorie*를 공부할 것). Bruntschli는 3요소에 정당성, 통합 개념을 추가. Gettel은 3요소에서 주권을 구체적으로 정부(권력을 장악한 자)주권이라고 지적. 어쨌든, 국법학적 체계는 sovereignty를 territorial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는 권력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규범론에 매달리다 보면 국가존재의 위기상황이 도래됨.

정치의 정확한 파악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연관시켜 봄으로써 가능해진다. Catlin은 정치현상을 process of will로서 국가현상만은 아니다라고. 그는 Fabian society의 멤버. amoralism의 입장. 정치의 과학화(behavior의 과학적 연구 =behaviorism 과 science of policy를 구분해 보아야 함)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종래의 사회학적 연구를 중시하느냐의 문제는 곧 현대정치학의 고민이다. 여기서 정치학의 두 갈래가 나누어짐. 그러나 현대정치학도 철학을 떠날 수 없고 가치평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 아니냐. 사회적 이념의 실현에 있어서 그 이념의 진실 여부는 그 사회가 결정하는 것. 민주사회의 변화 가능성.

Lasswell은 현실옹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가치개념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요소도 있다고. Easton 같은 학자는 Lasswell을 비판하는 미국의 정치학의 새로운 조류를 대표. 워싱턴 주립대학의 Wilson 은 영국적 전통을 이어 이념을 인정하는 입장. 시카고대학의 Merriam 은 behaviorist로서 정치현상을 power 개념을 가지고 설명. 정치현상을 사회현상의 범주에 포함시킴.

Simmel은 사회관계는 과학화가 불가능하며 인간관계로서 연구해야, 즉 사회학의 필요성을 역설.

Pluralist인 Cole은 정치현상을 사회현상 중에서도 주요한 몇 가지 제도, 예를 들면 귀족제도, 국교, 사유재산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작용으로 보고 시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바뀌는데 주목.

E. Barker와 같은 사람은 정치학을 어디까지나 social aspects로 파악하고 국가와 사회의 병존을 인정하는데서 다윈론이 출발한다고 함.

다윈론의 남상으로 역시 Aristotle을 들어야 함. 그의 mixed constitution 그리고 polity로서 democracy를 논한 것은 매우 균형이 잡힌 것으로 평가. 그의 국가론은 group interest를 중시하고 있음.

중세도 Barker가 말하는바 그리스정신이 계승된 공동사회(state society)의 특징이 있었으며 맨 먼저 로마에서 一君萬民一 왕제의 발전과 jus gentium으로 나타나는 이질세계의 공존—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기독교세계가 되면서 俗權과 教權이 분립·대립되는 현상.

로마시대의 국가호칭을 보면, stato, res publica, civitas 등이 있는데 Machiavelli의 stato와 중세의 等族사회(estate)는 다른 것이었다. 중세는 등족간

의 싸움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stato가 최종의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근세의 민족국가(nation)는 stato를 거쳐 발전한 것이다. 중세에 있어 “하느님의 통치”가 통했다고 하는 것은 곧 국가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민족국가 초기에 경제적으로는 mercantilism,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absolutism이 나누어져 발전.

민주주의란 다름 아닌 舊권력(국가)으로부터 사회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며 개인의 국가에 대한 자유를 그 본질로 한다. 초기의 민주주의는 종교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구하면서 발전—시민사회로 됨. 국가와 사회를 분리하는 이론에 앞서 하나의 전체 공동사회로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대표하느냐의 현실 문제에서 출발. Locke의 이른바 community as a whole, Graham Wallas, H. Laski, Cole의 Great Society 그리고 McIver의 community이론들이 이에 해당하며, Hegel도 일찍이 이론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분리해 보았는데 다만 이론에 그친 인상. Hegel은 인간의 역사를 정신사로 규정. 가족은 Sittlichkeit가 유지되는 단위(an sich). 그리고 물질적 충족을 위해 투쟁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bürgerliche Gesellschaft(für sich)이며 여기에 법(Recht)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하면 그의 국가는 Sittlichkeit와 Recht의 결합(an sich+für sich)으로서 최고이상을 구현하는 것. 이런 논리로써 국가와 사회를 구분. 따라서 그의 이론은 일단 양자를 구분하지만 결국 국가에게至高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주의라 하겠음.

Marxism은 사회가 국가를 능가하는 이론이긴 하나 proletariat dictatorship, 즉 권력의 일원화를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론과는 거리가 있음. 20세기의 Fascism, Communism은 일견 사회단체를 인정하고 결사의 병립을 수용하고 있긴 하나 지도자(elite)와 정당 중심의 체제를 고집.

현대의 국가다원론은 국가와 사회를 병존시킴.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장이 절대. 그런데 사실상 개인의 권리보장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結社가 중요. 결사를 통한 Freiheit vom Staat의 달성.

국가론자 Jellinek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현행 기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추상적·이론적 국가목적은 있을 수 있으나, 의식적 목적은 인정되지 않음. 그래야만 trade union의 존재이유가 생김. Lindsay(Modern Democratic State)나 Laski의 출발점. 19c말-20c초에 걸쳐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통해 생겨난 수다한 단체의 정치적 의미도 작지는 않지만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커

다란 문제는 정부의 비대화, 국가권력의 팽창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기업의 발달이다. 자유경쟁상태라면 결국 국가와 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는 국가가 퇴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든 사회에 대한 통제방법을 강구해 나온 점을 주목하라. 다시 말하면 국가는 사회단체와 병존하는 듯 하면서도 공권력의 향유에 의해 여전히 우세한 입장. 그리고 조정의 기능, 분배의 기능 등을 장악하여 사회를 통제.

다윈론의 이론적 배경

1. Otto Gierke의 단체이론 — Maitland—Barker—Laski로 이어져 내려 옴.

그는 1872-1898 간 독일민법편찬의 일원으로 법률 연구 끝에 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를 출판. 독일역사는 German족의 독특한 관습과 생활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 Hegel, Scharnhorst, Herder 등과 함께 독일통일의 기초를 이론화한 공적. Berlin univ.에서 Savigny와 더불어 독일민족의 단체, 특히 공동자치체(Gemeinde)와 Genossenschaft(guild) 연구. 그는 역사를 강조한 역사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정법을 넘어서는 생활 그 자체로부터 도출된 자연법을 중요시. =자연법학파. 이것은 Hegel의 민족정신과 통함.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영국에서 사회학적 접근법의 정치학을 발전시킴.

Von Gerber, Labungi, Preuss, Rosin u. Jellinek 등은 모두 국가의 법인격설을 주장. 이에 대해 Rousseau와 Kant에서 출발하는 학파는 국가를 moral personality로 봄. Gierke는 그 중간 입장을 취해 단체이론을 중심으로 잡다. 그 과정에서 영국의 “현실정치” 중시의 정치이론들을 도입 — 예를 들면, Hobbes처럼 공권력 강화에 의한 질서 확보론, 혹은 Locke의 권력위임론. 도덕론에 현실론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은 Bentham, Baghot, Austin 등. 이들의 이론은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은 미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독일의 법학자들은 Staat, Beamtentum을 연구하는데 있어 법철학, 국가학과 같이 이론적으로 정연함을 보임.

Gierke의 공헌은 법학적 접근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학적인 관점을 중요시

한 데서 찾을 수 있음.

1. 사회의 본질, 인간행위의 究明.
2. 법률의 운영면(legal work)을 중시.
3. Legal work에 대한 사회의 반사작용, 즉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구명.

요는 Gierke가 국가법인격설에 대하여 단체들도 legal personality임을 주장.

Barker는 국가가 단체들 보다 더 높은 윤리적 규범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체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법적 성격이고 the reality of associations를 보면 국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면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국가에 이념이 있다면 단체에도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Gierke는 이것을 생물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설명코자 한다. 즉 국가나 단체를 모두 biological organism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의 심리·의식에 대해서는 그 reality에 의문을 던짐. 이러한 그의 접근들이 영국의 Cole, Laski 등의 사회사상에 영향을 줌.

MacIver의 국가·사회 구분론; 그는 laissez-faire의 이론, 그리고 국가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국가라는 결사가 trade union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고 주장. 프랑스의 syndicalism 그리고 영국의 guild socialism에 의하면 사회라는 큰 범주 안에서 trade union 혹은 소비조합 같은 단체가 국가조직과 별개로 자체의 이성과 이익추구의 욕구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할 수 있다고 봄.

2. 사회적 다원론과 정치적 다원론

사회적 다원론의 대표로는 syndicalism과 guild socialism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다원론으로는 국가의 조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Laski를 들 수 있다. Cole은 초기에 전자에 속했으나 후기에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Cole은 국가를 여러 단체의 결합이라고 하고 국가를 social pluralism의 범주 안에서 설명코자 함.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직능의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Parliament를 세 가지로 나눔=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이것이 과연 pluralism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

Barker는 Oxford School의 말기에 속하는 학자로서 단체이론을 계승하여 인간의 공통된 이념의 문제는 현실에 입각하여 사회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서 이념이라고 함은 partial한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것이다.

3. Barker의 철학적 단체(groups in general)이론.

법률적 성격의 단체=노조, 비법률적 성격의 단체=교회, 양자가 모두 real person's capacity를 소유. 여기서 말하는 real person은 member의 단순가입이 아니라, 강력하고 뚜렷한 certain common good를 실현한다는 목적아래 결합된 것. 이들에 대해 국가의 법적 승인은 필요. Barker와 Maitland의 정치이론은 국가의 목적을 의식하는 데서 나옴. 이에 비하여 Laski의 다원론은 인간의 평등개념을 중시함.

Laski는 국가가 모든 것을 inclusive하게 관장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국가의 위에, 혹은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국내의 교회나 문화단체 같은 것도 그렇지만 국제법적 존재, 즉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Gierke는 Volk, Nation이 국가의 법적 결사로서의 바탕이 된다고. law proper, 즉 the law of life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제한적 존재에 불과. 따라서 국가를 법적인 면에서만 설명하는 것에 반대. Volk, church, nation같은 것은 법률학 이외의 science(정치학, 사회학)를 통하여 social data를 다룸으로써 연구가 제대로 됨. 말하자면 그는 국가형성과 발전의 보다 광범한 배경을 추구할 것을 요청. 그러나 Gierke의 이론에는 현대적 다원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있으니, 예를 들면 그의 “real person”. 그는 국가를 Volksgeist의 반영으로서의 reality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노조나 교회 같은 것과 비교될 수 없는 supremacy를 향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다면 전체주의 이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그의 common good를 추구하는 철학적 법률학은 성립되기 힘들며, 또한 그의 생물학적 국가분석은 현대의 국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의 다원론에 대한 기여는 단체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부여한 것.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란 무엇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입각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함. 국가나 단체가 무조건 도덕성을 갖는다고 해 버리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게 된다. 다원론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그 때, 그 때의 상황(situation)에 따라 도덕성을 파악해야 함.

국가를 기능적인 면으로 — 기능은 목적을 갖는다 — 분석한다면 이원론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여기서 Lindsay의 operative ideal이란 개념을 생각해 보자. operation이란 국가활동을 말하며 ideal은 국가목적을 가리킨다. 그는

political idealist이지, pluralist라고 하기 어렵다. situation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상주의를 좇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법

Aristoteles는 그의 『수사학』에서 particular law — positive law와 common law — according to the nature를 대립시키고 있다. 그의 『윤리학』에서는 purely positive element와 conventional element를 구분. Demokritos, Herakritos같은 Sophist들은 nature unity, 그리고 opinion과 convention을 구분하여 보았는데 Sokrates, Platon, Aristoteles도 그것을 따랐으나 특히 Aristoteles는 convention, 즉 방편으로서의 제도가 국가에서 오래 유지되면 도덕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Aristoteles는 먼저 인간의 조직에는 발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힘을 발전시켜 나갈 때 인간의 본능, 감정, 기술(art)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함. 그 다음 단계에서 인간이 최후의 목적에 이르게 되면 부분적인 something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universal한 자연법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인간들이 진화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따라서 polity가 만들어지려면 비교(정부론)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Stoa학과인 Zenon은 진정한 city — polity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여 자연법 이론을 전개. 그는 “분리된 rules of justice로서는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므로 四海同胞의 universal ideal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로마법의 이념으로 계승된다.

Cicero는 법체계를 3분함.

1. jus civile=시민법
2. jus gentium=상법, 계약법
3. jus naturale=general legal idea

여기서 2와 3은 구분하기 힘들다. 그는 자연법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했다. omnes homines natura aequalis sunt.

이러한 이념이 기독교에 의해 계승됨. God=absolute or natural law. jus

gentium은 relative natural law로.

Thomas Aquinas는 법을 4가지로 나눔.

1. lex humana=positive law
2. lex divina=canon law=하느님의 의사를 구현하기 위한 상대법
3. lex aeterna=불변의 진리, 인간의 능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한계.
4. lex natura=하느님의 법

Stoa학파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진 자연법 사상은 특히 Bologna대학에서 Justinianus법전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학문의 대상이 되고 또한 유럽 각지로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자연법 사상은 한편은 대학에서의 연구, 다른 한편으로는 Canon law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17-8세기, Grotius와 Kant같은 자연법이론가들은 그들이 당면했던 민족국가, 또는 종교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자연법을 원용하였다. 그들은 자연법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강구하였으며 자연법을 인간의 ratio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성의 존엄을 찾으려고 했다. 로마로 돌아감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한 것이다.

Grotius, Pufendorf, Burlamaqui, Vattel, Hobbes, Spinoza, Rousseau, Kant, Fichte와 같은 학자들은 국가보다 human society라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어프로치해 갔으며 그 사회는 법률체계라는 frame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인간관계,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단체 그리고 국가관계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사회이론, 국가론, 국제(법)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달리 표현하면, 첫째 개인주의, 둘째 민주주의, 셋째 주권이론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연법은 새 시대에 있어 正義의 기준이 되며,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윈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논하는 현대의 정치이론으로 발전한 것이다.

Gierke의 school of historical law로서의 위치

150여년전의 독일에서 명확한 법률체계를 수립. 당시의 독일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Adam Smith의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으며 독일 땅의

각 소국은 저마다 보호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말하자면 후진국이였다. 로마 법은 ratio-natura-scripta(Justinian Code)로 천년에 걸쳐 완만하게 발달해 왔는데 독일의 법학자들은 프랑스혁명 사상을 함께 수용하여 Nation을 중시하게 되었다. 프랑스혁명사상의 배후에 자연법 사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혁명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souverainete nationale)가 확립.

프랑스에서 Rousseau 등의 혁명사상이 고취되고 있을 때(1770년대) 독일에서는 Herder같은 사람이 romantische Bewegung을 주도. 그는 민요, 풍속 같은 것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민족정신(Volksgeist)을 고양코자 했음 — 여기에 바탕을 두고 Gierke는 Volksrecht를 생각해 냈. Hegel은 관념론이긴 하나 민족정신의 영구성을 확신하고 그것을 법으로 구현코자함 — 법철학(Rechtsphilosophie) 출간. 그가 민족이념에 집착한데 대해 역사학과 — Moeser, Osnabruock, Herder — 는 역사적 조건을 같이 고려. 이들은 베를린 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파를 형성.

Savigny는 das Gesetz ist das Organ des Volksrechtes라고 한바, 이것은 독일민족만이 소유한 전통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임. 1888년의 민법은 대부분 로마법을 계승하였으나 1896년의 개정시에는 독일법과 로마법이 균형을 이룸 — 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

Gierke는 독일법의 역사적 이원성을 극복하고 사회의 reality를 반영하는 personality로서의 법체계를 세우고자 함. 이 unified reality를 다원론이 받아들임.

1. 단체의 인격, 법인격론

1. Fiction theory; Jellinek가 국가를 설명한 예에서 보듯이 성원의 개인적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인격을 부여. 이것은 매우 형이상학적이지만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을 어디까지나 성원의 동의에 입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concession theory가 있음. 한편 Rousseau, Kant 등은 윤리구현이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설명.

2. Collective theory; 이 이론은 특히 영국에서 발달. 즉 단체는 모든 성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Gierke와 상통하나 내용이 산술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Hobbes는 성원 중의 1인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Bentham은 전성원이 단체를 지배한다고 했다. Maitland는 이것을 bracket theory라고 한바, 이 점에서 Gierke와 갈라진다.

3. Legal group person; 위의 2가지, fictional, collective theory를 피하고 real한 것을 추구. Occam은 개인만이 진실한 자기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그의 사상은 Calvin에 의해 계승 — 개인의 양심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이것은 voluntarism 또는 experimentalism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의 개인주의 사상에 영향.

이러한 이론들에 비할 때 Gierke는 단체에 reality를 부여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그는 단체야말로 living body이며 결코 impersonal nexus가 아니라고 했다. 단체는 itself can will, itself can act. 개인은 자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reality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 국가경제, 권력체계, 민법 등 — 에서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며 단체의 역사성, 민족성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external experience를 무시할 수 없다. 개인은 partial unity이고 단체는 higher life unity. 개인은 Standesgeist 혹은 esprit de corps 같은 것들 안에 포괄된다.

2. Gierke: 국가와 사회의 구별

인간은 그의 general purpose의 충족을 위해 공동생활(web)을 한다. 국가는 legal form을 통해 인간을 regulate하는 특수목적을 가진 association=Gesellschaft. 국가는 그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적 행위의 분야(a sphere of legal action)를 정한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drama와 그것을 연출하는 actor's role을 정하는데 누가 그 역을 맡느냐라는 것, 즉 국가의 대리인을 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무를 담임할 사람, 정부의 관리 같은 것이다. 같은 사회성원이라도 어떤 action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예라는 신분을 정하는 것이나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 등이다. 단체의 존재를 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principle of selection) — 법적, 관습적 — 이 있다. 이것은 국가의 본질에 연관되는 것으로 만일 권력자가 자의로 그런 것을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곧 독재이다. 국가성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consensus같은 것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 단체가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와 단체는 병존하는 것이며 다같이 legal person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체의 성원이 개인적인 감각이나 본능에 의해 자기이익을 추구한다면 단체는 곧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법인격을 단체에 부여할 때 목적을 일관되게 추구한다는 정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개인의 일탈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Harold Laski

중세의 사상들이 오늘날의 정치학에 연결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의 목적을 설정했다는 데 있다. Gierke는 자연법과 현실성을 결합함으로써 다원주의에의 다리를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Barker도 일치한다. McIver는 association보다 institution을 선호했으며, Canada의 정치학자 Leacock도 마찬가지.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Gierke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중시한데 대하여 Laski는 목적은 재평가될 수 있으며 언제나 인간정신에 의해 새롭게 추구될 수 있다고

Laski의 Gierke에 대한 비판; 그는 법률학자임에도 법을 역사적 조건에 매인다고 한 것. Bukharin은 사회학적으로 법의 유동성을 강조했으나 소련의 실상은 사회안정을 위해 법을 고정시킴.

Laski의 Gierke 해석: 국가는 법률적 결사. 국가에게 legal supremacy를 인정한다면 국가권력의 절대화, 즉 전제정치도 합리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법의 범주에 예속시키고 단체와 병존시킨다면 다원주의에 연결될 수 있다. 14세기의 W. Occam의 자연법이론은 개인의 reality를 인정한 공로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universality나 하느님 같은 추상적인 것도 개인이 받아들이는 한, 그 perpetuality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Gierke의 이론화에 영향을 줌. 다만 그는 개인의 reality를 민족과 역사 속에서 인정을 했다.

국가의 질적 면에 입각한 분석

1. 다원론이 제기된 동기

1) 철학의 근대적 성격

Catholic의 dogmatism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상대적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고 모든 사실들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게 되자 세상은 universe의 개념으로부터 multiverse, 즉 pluralistic하게 바뀌게 되었고 한편 자연과학의 발달은 모든 것의 이치를 밝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J.S. Mill의 ratio에 의한 이론의 확립은 multiverse의 입장을 강화.

W. James, J. Dewey의 pragmatism이 생산된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을 전개한 것도 다원론의 발전에 기여.

2) 정치의 발전

왕의 절대지배로부터 시민사회로 권력이 이양되고 시민사회의 initiative로 산업세력이 형성되면서 금융, 상업, 기업(제조)들이 일어나고 이들이 회사라는 새로운 사회조직을 발전시켜 나감. 지주의 대토지 소유는 이들의 진출에 의하여 상대화됨. 이들의 공존이 새로운 국가, 즉 Nation을 대두케 함 — political democracy의 발전.

그러나 자본주의의 팽창에 따라 새로운 계급, 즉 노동계급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부터 이른바 정치경제의 새로운 국가문제가 대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기존의 시민사회에 대해 도전하는 가운데 권력적 아프로치보다 economic interest라는 관점에서 syndicalism, guild socialism이 alternative idea로 발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는 경향.

Laski는 그의 “정치학 강요(1937)” 서문에서 정치적 다원론을 제기. 즉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정치화하여 해결코자 함. 그는 Marx의 문제제기를 평가하면서도 —義의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회를 multiverse하게 보아야 한다고 함. 그는 사회계약에 있어 기존의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의 참여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proletariat revolution은 기존의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pragmatic하지 않은 것이라고 함. 이러한 그의 관점의 기초에는 Gierke가 있음.

MacIver는 국가를 단일통합체로 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국가를 institutional system 혹은 association으로 파악. 사회의 형태로서 community와 association 그리고 institution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국가를 association으로, 정당조직, 지방자치, 교회는 institution으로 분류(Modern State ch. 1).

그는 국가가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행사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목적달성의 방법을 다른 사회조직과 공통된 것으로 봄으로써 국가도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 국가의 통치작용은 법률이라는 사회계약의 범위에 국한한다고. 다시 말하면 주권개념을 인정하지만 그 base를 법으로 규정.

MacIver도 Rousseau의 *general will*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석, 즉 그것을 국가의 의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의사라고 봄. *democracy*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가변적인 것. 그때 그때의 *majority*가 국가 의사를 형성하며 실제의 주권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케 하는 법제 정자(*legislative*)가 됨. 불변성을 더 강조하는 헌법보다 수시로 의회에서 정하는 *fundamental law*가 더 *pragmatic*하며 이것이 정치적 영역이다.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서 본 다원주의

1. Political monism

1) Plato시대에 이미 정치와 경제의 분리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것은 성직자와 군인을 구분하는 문제의식과 다름 없었음. Aristoteles는 경제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국가의 윤리성 — 지배성을 강조. 정치가 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요소들을 지배한다고. *polity*가 사회세력들을 정비례적으로 반영한다면 이해관계의 싸움이 그대로 전개될 것이므로 국가가 위험해 짐. 그는 정치적 안정이 부의 균형에서 이루어진다고 봄. 구체적으로 중산층의 확대를 말한 것. 어쨌든 국가를 최고의 사회형태로 본 *political monism*.

Thomsa Hobbes도 이 범주에 속함. 국가권력의 절대적 권위를 당위적인 것으로.

2) James Harrington의 *Oceana*

정치, 경제를 구분함. 그는 정부가 사회세력 중 가장 안정적인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토지소유자. 토지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결과하므로 토지의 평등한 소유가 되도록 해야 함. — 소작인에게 토지를 소유케 하는 정책.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함, 즉 정치의 경제지배를 말한 *political monism*.

약 30년 후 John Locke의 *Two Treatises*가 출판. Hobbes와는 다른 입장에서 정경분리. 그의 주제는 경제적 이익, 즉 사유재산의 보장. 자연상태로부터 사회계약을 맺는 목적은 상호간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있음 — 국가는 조정자 — 정부권한의 제한론. 그의 이론은 우선 보기에 *democratic ideal*에 배치되며

oligarchy로 기운 것 같으나, 생명, 재산,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념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economic monism이기도 하고 political monism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marginal한 편이다.

2. Economic monism

17세기 말에 Locke가 영국교회의 분리로 형성된 새로운 자산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론을 세웠는데 그 후 진행된 산업혁명 — 1750년경 Watt는 steam engine을 발명 — 에 의하여 산업자본가층이 형성되자 Locke의 이론이 적절히 쓰이게 됨.

새로운 자본세력은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치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바, 신판 zoon politikon의 등장이라는 변화와 더불어 정치사회가 형성됨. 한편 공장체제의 발달로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남 —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과거의 지배, 피지배계급의 대립보다 복잡한 구조를 제시. 즉 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등장 — 친목, 압력단체, 정당, 노동조합, 소비조합 등등. 한편 이론·사상의 면에서도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하여 사회주의가 대립.

Owen, Fourier, St. Simon 등의 utopian socialism에 대해 Marx와 Engels의 socialism은 scientific 하다고 주장했는데 전자가 정경관계를 애매하게 두었던데 반해 후자는 철저한 economic monism으로 혁명이 끝나면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단순논리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democracy의 substance로서 다원주의가 요청됨.

1) Syndicalism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economic monism.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을 Communism은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지만 Syndicalism은 권력개념을 배제하고 이익이 확보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임. 이것은 정치체도로서의 의회주의를 배격, 순수경제논리로 문제해결을 시도. Syndicalists중에는 anarchism을 신봉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도 있으나 Marxist에 비하면 혁명적이지 않고 다만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 decentralize된 다원적 공존주의, 즉 경제적 다원주의라고 하겠음.

2) Guild socialism

이것은 정·경을 대등하게 인정, 말하자면 Marxism의 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장악, 경제주체(노동자)의 권력장악, 그리고 Syndicalism의 분산자치주의를 조합한 것과 같다. 이들은 정치를 담당하는 국가가 점차 협동사회로 옮겨 갈 것을 주장했는데 이점에서는 일종의 anti-monism이라고도 하겠다. 사회가 직능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 동종업의 자치가 기본이 되며 국가도 고유업무가 있는 partial association이다. Parliament가 National Political Institution이라면 이에 대하여 Guild들도 National Guild를 조직한다.

Hobson의 “National Guild”에 의하면 Guild를 지방단위로 조직하고 이들의 국가간섭을 배제한 자치로서 충분하다는 것. 국가는 법률을 판장, 질서유지, 교육, 문화, 외교같은 것을 장악. 말하자면 국가를 2중으로 조직하자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도 양자가 대립된다는지, 각부분간의 충돌 그리고 예를 들어 경제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는지 하면 거기에는 국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G.D.H. Cole의 두 책, Self-government in Industry(1917), Social Theory — Guild Socialism, restated(1920)에서 정치의회와 Guild Congress의 분립을 강조. 국가는 소비자의 대표기관이고 Guild는 생산자의 대표기관으로서 완전히 동등한 위치를 점해야 하며, 일방만이 주권을 가지는 것은 부당. 만일 의사가 대립되면 합동회의에서 결정. 후기에 이르면 양자의 병립보다 Guild Society의 raison d'etre로 기울어짐.

그는 3가지의 Guild로 분류.

1) Industrial Guild = 생산직업종사자

2) 소비조합 = Cooperative Council = 양복과 같은 특수상품소비자

Collective Utilities Council = 수도, 전기 같은 공공 공급물

3) Civic Guild

다원론은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

다원론이 제기하는 주요 문제

1. 주권

Hobbes는 강력한 국가권력을 옹호한 사람이나, 교회에의 간섭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secular power에 대한 1차적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Bodin의 주권론도 legibus soluta를 말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한 권력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론이 political monism으로 보이긴 하나 시민의 권리와 실정법으로서 효력을 나타내는 권력을 상정했다는 데서 — political realism — 다원론과 상통하는 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Laski는 3가지로 권력의 범주를 나누어 보고 있다.

- 1) Parliament=법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단체.
- 2) Collective Power=정치적 주권으로서 정부장악, 법률적 구속, 도덕규제.
- 3) Effective Sovereignty=법제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Laski는 주권이라 할지라도 분리시키고 상대화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주권의 속성은 intangible한 것이라고. Dicey는 “좋은 정부란 법률적 주권과 정치적 주권이 적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돌아가는 데서 성립한다”고.

MacIver는 (1) General Will (2) Ultimate Sovereignty (3) Legislative Sovereignty (정부)로 나누어 보았다.

Cole은 (1) Community (2) Society (3) Association으로 분류하고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전체사회가 가진다고.

2. 일반의사

Cole은 그의 스승 Bosanquett을 따라 general will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는 real will이 없어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그는 real will은 매우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다. ideal will과 actual will을 구분. 그 양자의 관계를 구체화한 학자가 Hegel이라고. Hegel은 모든 계급의 의사를 집약하는 곳이 국회이며,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국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양자의 구분이라기보다 일원론을 위한 논리며 혼돈이라고 할 수 있다.

Cole은 Bentham의 summational will을 will of all, 즉 general will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particular will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현대의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Cole은 preestablished harmony에 의해 particular will가 결합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구성을 democracy에 원용하여 민주정부의 합리성을 구축. 그러나 여기서 강제적 요소가 있다면 자유의 문제가 제기된다. 강제는 actual will의 작용이며, 자유는 ideal will이다. 전자가 강조되면 사회민주주의는 어렵게 된다. actual will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동의와 복종간에는 상대방과의 미묘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논리전개과정에서 보면 결국 general will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general good을 말하지만 정치의 현실에서 그곳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only good for himself이다. 따라서 social authority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unanimous rule은 안되며, actual will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Kant는 인간이 내포하고 있는 Imperative에 입각할 것을 주장. a priori principle of legislation을 적용하면 인간이 선을 지향하는 것과 같이 법률이나 제도들이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설명.

인간은 개체로서 활동하며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고립되어 있지만 사회적, 정치적 동물로서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는 의미를 부여하면 역사성이 생긴다.

自我와 他我가 서로 사회적 관계를 이루며 여기에 非我가 보태어져 자연과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것이 모두 자아실현의 구조가 된다. 그 중간의 격률이 대립과 종합이며 여기서 목적이 있게 되고 그러면 보편성이 성립하게 된다.

다윈론은 Rousseau의 일반의사를 그 나뉠이로 재해석 함. 즉 일반의사를 사회성립의 base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일의 목적으로서 상정하고 있음.

3. 사회의 안정과 도덕의 문제

Leon Duguit는 “인간은 사회연대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편타당한 선형적 원리(real will)에 의해 규제받지만 현실적, 역사적, 사회적 연관에서 actual will의 지배를 받는다. 역사적, 사회적 실체란 multi-(uni-)versal whole이다. 여기에 고차원적인 목적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다원적인 영향요소

가 있으므로 그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원적 사회요소를 확인하여 보편성을 각자의 내부에 滲入시킴으로써 사회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성은 개별적 행위를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 규제를 개별적 personality가 사회전체의 목적론(teleology)에 연결되면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덕의 원리는 보편적, 선형적이어야 하지만 사회에의 적용은 실제문제에 입각하여 논하여야 한다. Kant는 자기입법적인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우리는 時空에 있어 경험적 자아를 중시한다. 보편성에 대한 목적론적 종속관계에서 인간행위는 규제되지만 상대적인 점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절대적인 것이 상대관계로 되며, 초개별성(Kant)의 인식으로부터 현대의 감성으로 변화해야 한다. 보편성은 사회생활의 실제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덕의 실현은 개인의 감성과 경험에 맞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도덕이 절대선을 추구하는데 대해 정치의 현실에서의 적격성을 상실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국가의 현실에서 보면 정치란 개인과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행위이다.

경제를 과연 도덕과 정치에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농경시대에는 가능했으나 경제행위의 주체가 개인 그리고 단체(회사)로 바뀌어지면서 그 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전체와 일치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그 자체로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격률(법)을 가지고 지배하며 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이 팽배한 적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공존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Laski의 political pluralism

1. 역사적 배경

모든 가치가 바뀌어 가는 20세기 초, 무슨 문제든 해결(muddling through)해야만 하는 현실적 요청의 시대. 이러한 접근은 19세기중엽 Tocqueville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체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데 특히 전쟁이 이른바 거국적 국민전쟁이 되어 버린 이후 국가는 귀납적인 위치로 바뀌었다. 다시말하면 일원론적인 데서 다원론적인 데로 옮겨 가지 않을 수 없게 됨. 그리하여 국가주권론에 대한 도전마저 생겨남. 사상과 현실의 양면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문제가 제기됨.

영국은 양자간의 조화, 즉 단일계급을 위한 *state socialism*을 취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유방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충적인 것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가 국가와 개인의 중간에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잡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교회, 가족과 같은 것은 국가의 포괄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면이 많다. 법률은 국가의 피복에 불과하며 국가의사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한계적 유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MacIver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방법들을 원용하여 법률의 조문(성문법)과 법률의 힘을 구분하였다. 법률의 힘이란 사회의 여론에 따라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법률의 적용을 말한다. 그는 국가도 상대적인 단체로서 반드시 주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회의 힘을 계량한 대의제도로서 민주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함.

Cole은 국가도 사회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이 점에서 MacIver와 공통되지만 *general will*을 강조한 나머지 통일사회로의 궁극적 발전을 모색한 것이 다르다.

Jellinek는 국가법인격설에 입각하여 *Selbstpflichtung*=*self-determination*을 주장하나 Duguit를 위시한 사회학파는 주권을 부인. 인간이 비록 권력에 구속을 받긴하나 사회연대를 이루기 위한 양해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즉 *legalism*에서 Laski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의 기능을 중시하는데서 문제에 접근해 갔다. Barker가 국가불신을 주장한 것을 원용하여 *polyarchy*로 나아갔던 것이다.

2. 방법론

W. James는 진리탐구의 상대성을 논했다. 사회를 탐구하는데 있어서도 상호연관성(*with, and*), 유한의 정신, 그리고 다원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무한의 욕구, *stimuli*를 이성의 입장에서 억제하여 *planned society*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Laski는 인간은 최선의 기회를 잡아야 하지만, 또한 전체의 *generality*를 지

향해야 한다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도덕이며 여기서 사회의 통일성이 성립한다고. 말하자면 particularity와 collectivism의 조화를 모색함.

그는 초기에 Pluralism, 후기에 이르러 Collectivism에 치중.

3. 1917

*Studies in the Problem of Sovereignty*에서 그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주권을 제기. 그는 국가도 개인이 속하는 하나의 단체라고 하면서도 다른 단체와는 구분하여 국가의 통일성의 계기가 된다고 평가. 국가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동의에 입각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함. 바꾸어 말하면 국가권력이 신임을 얻자면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쏟아야 함. 곧 국민과 국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임.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개인주의적 다원주의로서 anarchic pluralism으로 흐를 수 있음.

4. 1919

*Authority in the Modern State*에서는 개인주의를 더욱 철저히 바탕으로 함. 그리하여 주권의 존재를 부인. 국가권력의 reason은 개인의 복리에 대한 판단에서 성립한다고. 그는 Locke를 본받아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사회(노조, 학교, 교회)에 대한 헌신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개인의 권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확보하므로 국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Duguit말, “국가의 존재이유는 사회연대의 복리에 있다.”

5. 1921

*The Foundation of Sovereignty*에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중앙집권을 반대. 연방제가 더 좋다. 개인은 국가에 대립됨으로써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조직의 일원으로서 사회결사에 참여하는데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체제는 의회주권하의 자본주의. 그의 연방제는 지역개념이 아니라, 노사간의 평등과 협조의 공존관계라는 것을 말함. 지금까지의 국가가 hierarchical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pluralistic

state로서 federal structure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뜻하는 것이었다.

6. 1925/37

Grammar of Politics에서는 초기의 다원론과 후기의 Collectivism이 병존하므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구조는 인민의 동의가 바탕이어야 하며 그 기능은 민주주의, 목적은 복리이다. 그의 초기이론이 그랬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모든 사물의 최종적 판단자이며 국가가 개인의 복종을 받고자 한다면 국가는 개인이 존경할 수 있는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앞의 Foundation of Sovereignty를 따르고 있다.

Laski의 Collectivism

인민의 동의에 입각한 좋은 정부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 그의 뜻.

이제까지의 정치적 현실은 소수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고 사실상 일반 국민은 정치에 참여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소수지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첫째, 정부와 권력과는 관계가 없어야 한다.

둘째, Collectivism의 원리에 따라 각 단체의 연계관계가 발달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권력과 행위는 종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의 Collectivism은 경제적인 데로 비중을 옮기면서 탈권력을 시도함. 개인 이야말로 최선자아를 실현하는 주체이긴 하나 경제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의 무제한적인 행사는 제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 근거는 매우 도덕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無爲徒食은 안된다는 것. 개인이 방대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재산은 사회적으로 기여함이 적다. 그러므로 개인재산은 사회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화의 개념을 경제에 도입하자는 것.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은 공동체가 생산. 이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개인의 재산은 보장하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개인소유에 의한 반사회적 사용을 막자는 것이다. 이 점이 Marxism과 다른 점이며, Guild Socialism 및 Syndicalism과도 다른 점이다. Laski의 사상을 political pluralism이라고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조정기능을 인정하며 의회의 유용성(입법을 통한 정치적 합의)도 살리고 있다. 이 점에 있어 Cole이나 Webb와 다르다.

Laski는 rationalist, pragmatist, individualist, socialist였다.